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택시운송사업 및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 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원, 병원 및 종합병원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」 및 「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, 해당 기관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이용기관에 추가하고 적성검사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」 및 「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- 호

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조합·협회·연합회와”를 “조합·협회·연합회,”로 하고, “연수기관”을 “연수기관,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의원, 병원 및 종합병원(이하 “의료적성검사기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운영기관의 장은 의료적성검사기관에게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성검사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.

제24조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”을 “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”으로 한다.

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관리시스템 이용권한(제8조제2항 관련)

기관명	이용권한
국토교통부	1. 교통안전정책 수립 및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한 전체 자료
한국교통안전공단	1. 여객법 제22조 및 제27조, 여객규칙 제45조 및 제58조의3, 화물법 제10조의2 및 화물규칙 제20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2. 여객법 제24조 및 화물법 제8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3.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
시·도 및 시·군·구	1. 여객법 제22조 및 여객규칙 제4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현황 통보 업무에 관련된 자료 2. 여객법 제24조 및 화물법 제8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관리를 위한 자료 3. 여객법 제25조 및 화물법 제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관리를 위한 자료 4. 여객법 제27조제2항 및 화물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여객 및 화물 자동차의 안전운전을 위한 자료 및 행정처분 결과 입력 자료 5. 기타 지역 교통안전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
연합회, 조합 및 협회	1. 여객규칙 제45조제1항, 화물규칙 제19조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속 운수업체 및 운전자 현황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2. 오류 전산자료 수정 및 입력 현황 등 확인(소속 운송사업자로 한정) 3. 기타 소속 운송사업자 지원 및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자료
운송사업자	1. 여객규칙 제45조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소속 운수종사자의 입·퇴사 자료 입력 또는 입력 내용 확인 2. 여객법 제27조제2항 및 여객규칙 제58조의3제2항, 화물법 제10조의2제3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속 운수종사자중 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확인
연수기관	1. 여객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 및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
의료적성검사 기관	1.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받은 의료적성검사 관련 자료

<p><신 설></p> <p>제24조(재검토 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② 운영기관의 장은 의료적성검사기관에게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성검사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24조(재검토 기한) -----이 고시에 대하여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에 따라 2025년-----.</p>
---	---